



건설 · 중소기업 관련 분야별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 ● ● ● ● ● ●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 중소기업 관련 개편 ·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편집자주]

환경 · 국토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그동안 보호대책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와의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시행한다.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지급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사회 전반에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금지된다. 또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뒤, 그 이듬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nir.me.go.kr)로 제출해야 한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확대 시행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됐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위해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2011년도부터 시행된 주철관류(11.5.26), 기타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11.11.26)에 이어 2012년 5월 26일부터는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시작된다.

고용 · 노동

■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교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시급 4,122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제도 개선

현행 제도상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단위로 채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현장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토록 하면,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또다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올해부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협조 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설치의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480만원에서 월 120~5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시행 및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미 시행됐으며,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공정거래·금융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반 업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법령개정으로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동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인력실태조사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세제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주거·소비 등 국민 일상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의 경우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

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상속 또는 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 개시일(실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상속이나 실종시 취득세 신고를 ‘상속 개시일(실종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 및 증여세법과 달라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하여 기간연장 효과 및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전에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tip

72:1의 법칙

자신이 결심한 사항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단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이것이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이디어 적용 TIP

- 계획을 세워라
- 전략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자
-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 비슷한 계획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 그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가?

INSIGHT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결심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열정 에너지에 불을 붙여보자

— 위르겐 힐러 <성공의 법칙> 중